

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남완현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0. 20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619호로 2025년 10월 2일 남완현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 교류·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사용허가와 사용료·감면·반환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청년시설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라.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- 마.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바. 자체운영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년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 10. 2.~2025. 10. 15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영등포구도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(이하 “기본조례”라 한다) 제22조 단일 조문에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, 예산지원, 위탁운영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

제22조(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

2.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

- 한편,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, 청년인구 수는 여섯 번째로 많아 청년층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,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인프라 확충과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특히, 영등포구는 2025년 1월 1일자로 ‘미래도시국’을 신설하고 그 하부에 ‘청년정책과’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, 향후 청년시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.
-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기본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청년시설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, 청년시설의 체계적·전문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한편, 영등포구 청년시설은 다음과 같음.

명 칭	내 용
청년 건축학교	- 실내건축인테리어분야 자격증, 현장실무 교육 및 주민 대상 원데이 특강 교육 운영 - 국가유공자·취약계층 집수리 등
청년 1인창업 지원실	-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1인 창업지원실을 제공하여, 청년창업기업에 입주공간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
서울 청년센터 영등포	- 청년 거점 공간을 활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, 고립·은둔 청년 발굴 및 활동 지원, 자조 모임 활성화 등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청년시설, 사용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)는 청년시설 설치 및

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- **안 제4조(사용허가)**는 구청장이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고, 신청 절차와 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- **안 제5조(사용허가의 제한)**는 공익·시설보호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, 시설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함.
- **안 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)**는 허가조건 위반, 부정한 방법의 신청 등 부적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여, 건전한 시설운영을 도모함.
- **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** 청년시설 사용료·수강료 납부, 감면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함.
- **안 제10조(사용자의 의무 등)**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 훼손 또는 분실 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시설 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- **안 제11조(자체운영규정)**는 위탁운영자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,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통제를 조화시키고자 함.
- **안 제12조(운영 위탁)**는 청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

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르도록 하여,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기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 단일 조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년시설 관련 사항을 ▲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▲사용허가 ▲사용료 및 감면·반환 기준 ▲사용자의 의무 등으로 구체화하여, 청년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청년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3.21>

제24조의2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·단체(이하 "청년단체등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23.3.21]